

제325회 정례회
2013. 12. 20(금)

심 사 보 고 서

- 충청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건설소방위원회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공사상(公死傷)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

「충청북도 공사상(公死傷)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3. 12. 20(금)

건설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임헌경 의원 외 6명

나. 발의일자 : 2013년 12월 2일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12월 3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12월 10일

(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: 임헌경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각종 재난 및 소방활동 중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충청북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유가족 및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(안 제3조)
- 책무(안 제4조)
- 지원계획 수립(안 제6조)
 -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(사고예방 안전조치, 지원시책 마련 등)
- 재원의 부담 및 확보(안 제7조)
- 충청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8조)
- 자녀장학금 지원(안 제9조)
- 취·창업 우대 등(안 제10조)
 - 도의 공기업, 출자·출연기관 취업 시 우대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: 문홍열)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재난이나 소방활동 중 순직 또는 부상을 입은 충청북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상위법령에 의한 위임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,
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중 ‘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’에 속한다고 사료되며,

- 동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, 본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.
- 입법예고('13. 11. 11. ~ 12. 1.)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,
-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공사상(公死傷)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자녀장학금, 취·창업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자녀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있어 안제9조제2항에 장학생의 선발방법, 지원규모, 신청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는데,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이나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타 법령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학금의 유형과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공사상(公死傷)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충청북도 공사상(公死傷)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대응과 소방현장 활동 중 순직 또는 부상을 입은 충청북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진작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순직소방공무원”이란 「소방기본법」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제17조의 소방활동, 소방지원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·훈련 중 사망한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을 말한다.
2. “공상소방공무원”이란 제1호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으로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질병 및 부상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.
3. “공사상 소방공무원”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충청북도 소속 “순직소방공무원”과 “공상소방공무원”을 말한다.

제3조(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)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배우자
2. 자녀

3. 부모

4.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

5.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(弟妹)

-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,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. 다만, 해당 소방공무원과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.

제4조(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소방공무원의 질병 진료와 특수건강진단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도내 의료 기관이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」에 의한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·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써야 한다.

제5조(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)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지원계획 수립) ①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
2.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

3. 공사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
4.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
5.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
6.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7조(재원의 부담)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 계획에 반영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제8조(위원회 설치·운영) ①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충청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.

1.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
2. 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
3.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당연직 위원은 소방본부장이 되며, 위원은 아래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

1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
2.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3. 병원장 및 대학교수

4. 그 밖에 소방업무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관계 공무원은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9조(자녀장학금 지원) ① 도지사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방법, 지원규모, 신청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(취·창업 우대 등) ①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취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도의 공기업이나 출자·출연기관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이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창업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할 때 우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「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

2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 및 지원

3.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우대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「소방기본법」

제16조(소방활동) ① 소방방재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, 재난·재해,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·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.

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·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]

제16조의2(소방지원활동) ① 소방방재청장·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(이하 "소방지원활동"이라 한다)을 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
1. 산불에 대한 예방·진압 등 지원활동
2.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·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
3. 집회·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
4. 화재, 재난·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
5.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활동(화재, 재난·재해,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)
6.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활동

② 소방지원활동은 제16조의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

에서 할 수 있다.

- ③ 유관기관·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·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·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
[본조신설 2011.3.8]

제17조(소방교육·훈련) ① 소방방재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·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② 소방방재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·유치원·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6.7, 2013.3.23>

1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
2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
3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

- ③ 소방방재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 발생 시 피난 및 행동 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.

- ④ 제1항에 따른 교육·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, 그 밖에 교육·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>

[전문개정 2011.5.30]

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

제8조(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·운영 등)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 기관을 말한다.

1.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과 그 밖의 국공립병원
2. 제1호 외의 의료기관으로서 시·도지사가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의료기관

② 소방방재청장은 시·도지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의료 기관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의료기관은 해당 시·도에 국공립병원이 없거나 국공립병원이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(이하 "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소방공무원의 진료
2.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
3.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·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

④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시·도가 부담하며, 그 밖에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지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.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적용 대상 국가유공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(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

5. 순직군경(殉職軍警):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(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6. 공상군경(公傷軍警):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
제5조(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)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8.3.28, 2011.9.15>

1. 배우자
 2. 자녀
 3. 부모
 4. 성년인 직계비속(直系卑屬)이 없는 조부모
 5. 60세 미만의 직계존속(直系尊屬)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(弟妹)
-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,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. 다만,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

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. <신설 2011.9.15>

제25조(수업료등의 면제 등) ①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, 입학금,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(이하 "수업료등"이라 한다)를 면제한다.

② 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. 다만, 교육기관 중 대학,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(이하 "대학등"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(到來)하는 수업료등부터 면제한다.

<개정 2009.2.6, 2011.9.15>

③ 사립인 대학등이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.

④ 국가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(國庫補助)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

니한다.

<개정 2011.9.15>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거나 지원하는 연한(年限), 기준 및 교육지원을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8.3.28]

제26조(학습보조비의 지급)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<개정 2011.9.15>

1.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

2. 그 밖에 학습보조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

② 제1항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액, 지급방법,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9.2.6, 2011.9.15>

[전문개정 2008.3.28]

[제목개정 2009.2.6, 2011.9.15]

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

제29조(공무상요양비)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 발생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

2. 공무수행 중에 라듐방사선·자외선·엑스선 또는 그 밖의 유해방사선의
취급으로 인한 질병
3. 공무수행 중의 화상 또는 동상
4.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
5.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
6. 공무수행 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
증 및 후유증
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
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
8. 평소의 질병·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 상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
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
및 새로 발생한 질병·부상
 - 가.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지속적인
직무의 수행
 - 나.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
 - 다.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

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세부 기준은 안전
행정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>

[전문개정 2012.3.2]

제30조(공무상 요양 승인) ① 공무원이 요양기관에서 제29조에 따른 요양
비를 받는 요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

(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, 이하 제31조, 제33조 및 제33조의4에서 "공무원등"이라 한다)은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서에 요양기간을 명기한 진단서(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한정한다)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그 질병 또는 부상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미리 그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후 지체 없이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.

1.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

2. 상병 경위조사서

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, 연금취급기관장 및 제31조의2에 따라 공무상 요양급여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2.3.2]

「지방자치법」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7.5.17, 2011.7.14>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
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다. 생활이 곤궁(困窮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
6.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

가.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(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)의 편성과 운영 및
지도·감독

나. 지역의 화재예방·경계·진압·조사 및 구조·구급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
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
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지원 대상: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
- 지원 금액:
 - 고등학생: 연 100만원(학기 당 50만원)
 - 대학생: 연 200만원(학기 당 100만원)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자녀장학금 지원(안 제9조)
도지사는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자녀장학금(이하 “장학금”이라 한다)을 지원할 수 있다.

3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〈자녀장학금 지원〉

-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원기준은 고등학생 연 100만원, 대학생 연 200만원으로 함.

나. 추계 결과

- 자녀장학금 지원: 연 600만원
(고등학생: 100만원×2명=200만원, 대학생: 200만원×2명=400만원)

4. 연도별 비용추계서 :

〈연도별 비용 추계표〉

(단위 : 백만 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4년)	2차년도 (2015년)	3차년도 (2016년)	4차년도 (2017년)	5차년도 (2018년)	계
세 출		6	6	6	6	6	30
자녀장학금	고등학생	2	2	2	2	2	10
	대학생	4	4	4	4	4	20

5. 작성자 : 임헌경 의원